KMA 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~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팀장 백영기(6581) / 팀원 이연주(6548)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03841호

시행일자 2020. 7. 1.

수 신 각시도의사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**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**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
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-421호 (2020.6.8.)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-2651호 (2020.6.8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38호 (2020.6.30.)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867호 (2020.6.30.)

3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11호, 2019.5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.

○ 주요개정내용 :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(미등록 암환자) 항목 삭제

○ 시행일 : 2020년 9월 1일부터

○ 관련 문의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☏ 044-202-2740

붙 임 : 개정문 및 관련 기준 전문 각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